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0. 28. 임광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10.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
회부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원회(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원회(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원회(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원회(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원회(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5.2.11.) 상정·의결(수정가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광현의원)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의 기준을 '1억원'에서 현행과 같은 '7천만원'으로 수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 이유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의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의 기준을
‘1억원’에서 현행과 같은 ‘7천만원’으로 수정함.

부대의견

- 가.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 나. 기획재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제도의 종합적인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1억원”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7천만원”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을 “공포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3. ----- ----- -----	3. ----- -----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u>7천만원</u>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가. ----- ----- ----- <u>1억원</u> ----- ----- ----- ----- ----- ----- ----- -----	가. ----- ----- ----- <u>7천만원</u> ----- ----- ----- ----- ----- ----- ----- -----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나. ----- ----- ----- ----- ----- ----- ----- -----	나. ----- ----- ----- ----- ----- ----- ----- -----

액이 <u>7천만원</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생략) ② ~ ⑦ (생략)	----<u>1억원</u>---- ----- -----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u>공포 후 3개월</u> <u>이 경과한</u> 날부터 시행한다.	----<u>7천만원</u>-- ----- ----- ----- 4. (개정안과 같음) ② ~ ⑦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 - <u>공포한</u> ----- --.
---	--	---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1세대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 ----- ----- ----- ----- -----. ----- ----- ----- ---
1. 과세기준일 현재 <u>1세대 1주택자</u> 일 것	1. ----- <u>1세대 1주택자</u>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